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안내자료

※ 자금 신청 전 유의사항

①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 **필수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 신청이 최종 접수**되며,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되더라도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자금 신청 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자금집행계획)'을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됩니다.

③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작성한 **자금집행계획 외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출금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일시회수 (필요 시 지연배상금 부과),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④ **대출한도는 기업평가 등을 통해 결정**되며,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도가 감액**되거나 **대출이 부결될 수 있습니다.**

⑤ **실질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 대출 신청기업에 안내 후 대출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 부결 시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불이익 방지)**

⑥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대출실행, 신청취소 등) 전까지는 공단 직접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1. 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지원대상 :** 다음 1.~3.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다음 유형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일반형)** ❶백년소상공인, ❷사회연대경제 조직, ❸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❹스마트기술

❶ **(백년소상공인)**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백년소공인)*'에 선정된 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지정서(舊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확인서)' 상 유효기간 이내에 신청 가능

❷ **(사회연대경제 조직)** 협동조합, 사회적(예비 포함)·마을·자활 기업

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 후 1년 이내 신청한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인정기준>

- **(인정대상)**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대표자만 대출 신청가능
  * 법인기업의 경우 해당 대표이사가 사관학교 수료자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 명의로 신청 가능
- **(인정기간)**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자격 인정
  * 수료증 출력 방법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 마이페이지 – 증명서발급관리 – 증명서발급신청 – 등록 - 증명서 구분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선택 - 발급신청

❹ **(스마트기술)** 스마트기술을 도입 후 적극 활용하여 생산·유통·판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효율화를 이룬 소상공인

* 단,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또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해당 설비, 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매출 시현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 후 최종 지원 결정

< 스마트기술 풀(Pool) >

대분류	세부분류
3D	3D 풋스캐너, 3D 프린터, 3D프린팅설비
AI·IOT	AI CCTV, AI 두피분석, AI 가상체험, AI 안면(체형)인식, AI·IOT온도관리시스템, 안면·QR·지문출입인증시스템
VR·AR	가상핏팅, 스마트글라스, 스마트미러,
키오스크	주문, 예약, 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키오스크 단말기
디지털오더	QR/NFC 오더, 테이블 오더
무인판매기	AI 무인판매기, 꽃 무인자동판매기, 무게형 무인판매기, 모듈형 무인판매기, 무인키텍 솔루션, 무인매대 스캐너
로봇	서빙로봇, 헬퍼로봇, 밴딩머신, 조리로봇
사이니지	디지털광고보드, 디지털메뉴보드
전자칠판	스마트 전자칠판
구독형 S/W	고객관리 및 예약 S/W, 매출분석 S/W, 재고관리 S/W
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예약관리·원격웨이팅 솔루션, 매장멤버십관리시스템, 공간관리통합관리시스템, 축산 육가공공정시스템

② **(혁신형)** ❶수출, ❷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❸스마트공장 도입, ❹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❺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❻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❶ **(수출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간접 수출 실적이 1천불 이상인 소상공인

* 수출 실적 인정 기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 기준으로 인정(미달러화 기준으로 하되, 이종 통화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원 최종월 말일 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미달러로 환산

<이종 통화의 미달러 환산 예시>

• 수출실적 600,000엔일 경우(매매기준율 100엔 당 924.40원, 1달러 당 1452.60원 가정)
- 1차 원화환산 : 6,000엔 x 924.40원 = 5,546,400원
- 2차 달러환산 : 5,546,400원 ÷ 1,452.60원 = 3,818.26달러
  * 매매기준율은 한국무역협회(Kita.net) → 공지·뉴스 → 환율종합에서 확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가 추천한 수출 다변화 소상공인의 경우 접수방법 및 접수시기 개별 안내 예정

❷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 최근 2년이 '24년, '25년인 경우, ①'23년 대비 '24년, ②'24년 대비 '25년 매출액이 모두 10% 이상 증가

** 단, '23년도 매출액이 5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❸ **(스마트공장 도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 설비도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Level 1~5인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 참여가 확인된 도입 또는 예정인 소상공인>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art-factory.kr)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과제진행상태가 '협약완료' 단계 이후인 소상공인 (유효기간 이내)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 등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 소상공인
  * 단, 공급기업, 신청취소기업, 사업중도포기기업은 대출지원대상에서 제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Level 1~5>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Level 1~5등급을 취득한 기업(수준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확인기관)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대한상공회의소('25년 기준)

❹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소상공인

❺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지원 제외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예시>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소기업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 4억 5천만원 이상 ~ 15억원 이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 3명 이상 ~ 5명 미만

※ 소기업 매출 기준은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참고
※ 소상공인 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단,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인 업체가 추가 대출신청 시 혁신성장 촉진자금 대출한도내에서 한도사정 후 추가대출* 가능

* 기실행 대출건의 유형과(혁신형·일반형) 상관없이 졸업후보기업이면 추가 대출가능

❻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대출계좌별로 판단하되,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는 제외

2.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 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3.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 되는 자금

* '일반형-❸사관학교 수료'의 경우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시설자금 신청 불가)

□ 대출조건

○ **(대출한도)** 유형별 대출한도 적용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 **(혁신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동일관계기업 : 동일인이 대표자이거나 실제경영자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동일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으로 추가 신청하는 경우, 연간 운전자금 한도 최대 2억원

<대출한도 운영방법>

• 동일관계기업 당 최대한도 : 동일관계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잔액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리대출 잔액 포함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 분	우대금리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0.1%p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0.1%p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0.1%p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0.3%p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0.2%p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 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대출계좌별로 판단(단,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 **(금리인하제도)** 대출신청 기업이 대출기간 중 소기업 및 중기업 이상으로 성장 시,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적용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은 2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 가능)

자금용도	선택가능 거치기간
운전자금	▪ 비거치 ▪ 1년(12개월) ▪ 2년(24개월)
시설자금	▪ 비거치 ▪ 1년(12개월) ▪ 2년(24개월) ▪ 3년(36개월)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26. 8. 10(월), 10:00 ~ 18:00

* ’일반형-❷사회연대경제 조직‘, ’혁신형-❺소상공인 졸업후보‘는 상시접수로 진행

□ 대출 진행 절차

○ 자금용도 및 자금유형에 따라 대출 진행 절차 상이

< 혁신성장촉진자금 융자 절차 >

1 신청 및 지원대상 확인	→	2 정책우선도 평가 (해당 시)	→	3 기업평가 및 대출심사	→	4 대출약정	→	4 대출 실행	→	6 사후관리
• 자금요건 확인 • 제한대상 확인 • 신청서류 확인				• 기업평가 및 현장실사 • 대출 심사 후 지원 결정		• 지원대상 재확인 • 약정 체결				•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등

< 자금용도 및 자금유형별 절차 구분 >

자금용도	유형		절차 구분
운전자금	① 일반형	❶백년소상공인	정책우선도평가 적용
		❷사회연대경제 조직*	정책우선도평가 미적용
		❸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정책우선도평가 적용
		❹스마트기술	정책우선도평가 적용
	② 혁신형	❶수출	정책우선도평가 적용
		❷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정책우선도평가 적용
		❸스마트공장 도입	정책우선도평가 적용
		❹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정책우선도평가 적용
		❺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정책우선도평가 미적용
		❻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정책우선도평가 적용
시설자금	유형무관		정책우선도평가 미적용

* '일반형-❷사회연대경제 조직', '혁신형-❺소상공인 졸업후보'는 상시접수로 진행

※ 대출심사 및 대출약정 과정에서 **지원대상 미충족, 허위 자료 제출, 부정 신청** 등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이 거절**되며,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조기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 대출신청

○ **(대출신청)** 자금용도별 대출신청 방법 상이

- **(운전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관할 지역센터 방문 신청

※ 동일 접수 기간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2 정책우선도 평가(해당 시)

① **(대출제한대상 검증)** 접수 건에 대하여 소상공인 여부 등 지원대상 여부, 대출제한대상 여부를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검증

< 검증 항목 >

① **소상공인**, ②**공공·신용정보**, ③**휴·폐업**, ④**세금체납**, ⑤**연체**, ⑥**부채비율, 매출액 초과 차입금, 한계기업** 등

- **(자료보완)** 필요시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2일 이내의 보완 기간 부여

② **(정책우선도 평가)**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 실시

- 정책자금 수혜이력, 업력, 정책자금(직접대출) 성실상환 이력, 정책우대기업(장애인기업, 청년, 여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③ **(결과발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 공지

- **(선정)** 심사 관할 지역센터를 배정하고 기한 내 신청 서류 제출*

  * 기한 내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동 취소

- **(예비)** 선정 기업 중 대출심사 부결, 취소 발생 시 '선정' 상태로 변경
- **(미선정)** 예비 순위 미포함 신청 기업

  * 정책우선도평가에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재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추후 접수일정을 참고

④ **(신청접수)** 본인 확인 및 채무관계자 적격 확인, 지원대상, 제한대상, 제출서류 적격 확인 후 신청접수 처리

* 정책우선도평가 결과가 "선정"인 경우라도, 신청접수·대출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 불가

3 대출심사

○ 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하여 대출금액 및 대출실행 여부 결정

*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 비대면 서류제출의 진위 확인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 사업장 방문하여 현장실사 실시

4 대출약정

○ **(개인기업)**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약정취소사유 발생 시 원복불가

5 대출실행

○ 대출금 지급 신청 계좌로 대출금 입금

* 입금이 불가한 계좌로 지급 신청 시 대출 실행이 불가하며 재약정 필요

6 사후관리(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 공단은 정책자금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을 실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 **점검방법**

- 대출실행 기업은 서류제출기한 이내에 점검서류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제출

구 분	내 용
서류제출기한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점검서류	- ‘대출금사용내역표<서식11>’ 작성본 및 대출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증빙자료는 대출금사용내역표<서식11> 내 참고자료 확인)
서류제출경로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나의대출] - [대출정보] - [대출금사용내역제출] - [파일올리기] 버튼 클릭

○ 제재조치

구 분	내 용
서류 미제출 등	-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14일 이내의 추가 유예기간 부여 및 서류 제출 요구
	- 최종 서류 미제출 시, **대출금 전액 조기 회수** 및 **기한의 이익상실 조치**및 **3년간 신규대출 취급 제한**
용도 외 사용 발견 시	- 점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용도 외 사용금액 상환 요구 - 최종 상환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기한의 이익상실** 조치 및 **3년간 신규대출 취급 제한**

□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 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자금 신청 후 대출종결(대출실행, 신청취소 등) 전까지는 공단 직접 대출 추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류 상 계속 영업 중이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휴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불가합니다.

○ 대출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신청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유형 및 판단기준

구분		내용
정의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대출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
유형	피해 유발 행위	①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정책 목적 훼손	②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③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④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공기관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청탁금지법 제5조에 의한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
		⑤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에 해당 -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자격사칭에 해당
		⑥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2.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 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확인 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붙임2]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 등 확인 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업종

-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붙임3] 업종구분 방법',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신청자격>

• 개인기업은 **실제경영자*를 주채무자**로 운용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운용)

"**실제경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 또는 간부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자
2. 직위(사장, 전무, 상무 등), 명칭, 출자지분율 등에 불구하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참고) 주된 사업장 결정 기준>

• 주된 사업장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함

1. 제조업 : 가. 법인기업 : 공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공장
2. 그 밖의 업종 : 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나.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무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같은 기업이 수 개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의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나. 같은 업종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 설비 정도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되, 설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함
   다. 자가사업장과 임차사업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자가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단, 임차사업장의 설비정도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는 임차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라. 공부상의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3. 대출제한대상

<적용기준>
- 본 대출제한기준에 관한 내용은 2026년 7월 13일 대출신청 접수 건부터 적용한다.

□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에 대하여 대출신청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1. 세금체납</td><td>-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예외사항>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td></tr>
<tr><td>2. 신용정보등록</td><td>-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신용도 판단정보</td><td>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td></tr>
<tr><td>공공정보</td><td>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td></tr>
</table>
<예외사항>
• '일반형-❹사관학교 수료'에 한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는 대출신청 가능</td></tr>
<tr><td>3. 연체</td><td>-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현재 연체 중
2.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td></tr>
<tr><td>4. 자가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td><td>- 자가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td></tr>
</table>

구 분	내 용
	<자가사업장 기준>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자가주택 기준>** •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5.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업체가 동일 연도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1. 동일한 자금의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동일한 자금의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다만, 다음 ❶~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대상에 포함 ❶ 시설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 ❷ 기 지원받은 대출금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 ❸ 소상공인졸업후보기업 유형을 지원 받으려 하는 경우
7. 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8.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총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예외사항>** •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대출금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제재조치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3.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1.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12. (법인기업) 책임경영 심사 관련 제한	- 책임경영심사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흡한 경우
13.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 허위 또는 부정 신청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

구 분	내 용
15. 3회 이상 지원 불가	-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예외사항>**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유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16. 대출한도 산출 불가	- 신청정보 및 제출서류 검토결과 대출심사를 진행하더라도 대출한도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정보주체(개인, 기업)의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에 따라 공단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제공 요구하지 않거나 공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대출신청 자료

① 공통자료

※ 정책우선도 평가를 적용하는 경우, 정책우선도평가 '선정' 시 ❷~⑩ 서류 제출
※ 정책우선도 평가를 미적용하는 경우, 대출 '신청' 시 ❶~⑩ 서류 제출

구분	서류명	비고
❶ (신용)정보 동의서	- [필수]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가진단<서식2> - [필수]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서식3> - [필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서식4>	각1부 (온라인 제출)
	<개인기업, 법인> - [필수]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5>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대표이사> - [필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서식6>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7-1> -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7-2>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여신협)<서식7-3> - [필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여신협)<서식7-4>	

구분	서류명	비고
❷ 대출신청 서류	- [필수]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서식1>	각1부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서식6> -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7-1> -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7-2>	해당 시 각1부
❸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택1부
❹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1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음 *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 위 서류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서식8>'**로 제출할 수 있음	1부
❺ 상시 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택1부 (1개월 이내)
❻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보증인(법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❼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표시 : 주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1부 (1개월 이내)

구분	서류명	비고
❽ 주된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은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제출	각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 "제출(발급)용"만 인정하며,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최근 3개월 이내 거주주택 주소지 변경 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각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서식9>**' 제출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 임차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은 위·수탁(지입) 계약서 제출	해당 시 1부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서식10>**' 제출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거주 하는 경우 등	해당 시 1부
❾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택1 (1개월 이내)

구분	서류명		비고
	<보충서류> • 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법인면세사업자 : 최근 1년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⑩ 신청대상 확인	① 일반형	**<❷사회연대경제 조직>**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관련 인증·지정·인정서 사본 - 정관(또는 규약) 사본 - 이사회(또는 총회) 의사록<서식13> **<❸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창업소요(투자)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표<서식14> - 창업소요(투자)금액 관련 견적서 * 임차사업장 보증금 잔금 미지급 업체의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에 따른 추가 동의서'<서식15> 제출 **<❹스마트기술>** -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스마트설비(기술·장비)를 구입한 매매(주문제작)계약서, 수입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 등 - 임차(렌탈, 리스 포함)인 경우 계약서, 임차료 지급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본 등 • 스마트기술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❶백년소상공인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또는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등)
	② 혁신형	**<❶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 **<❸스마트공장 도입>** - 스마트 공장 보급·환산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 : 협약서 사본, 사업완료보고서 사본 등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사본 **<❹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협약서 사본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❷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 마이데이터로 확인 불가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❺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원리금납입내역확인서 등을 수집할 수 있음

② 법인·시설자금 추가제출 자료(해당 시)

구분	서류명	비고
❶ 법인기업 추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해당 시 각1부
❷ 법인기업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해당 시 각1부
❸ 시설자금	- 시설투자계획서<서식12> - 기계설비 견적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 자체제작인 경우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해당 시 각1부

③ 금리우대·기업평가 추가제출 자료(해당 시)

구분	서류명	비고
❶ 금리우대	**<정책우대 유형 증빙>** - (은행권 컨설팅)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사회안전망 유형 증빙>**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증서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정책우대 유형 : 소진공 컨설팅,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가맹점 • 정책배려 유형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성실상환 유형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또는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등)
❷ 가점사항	**<수출실적 증빙>** -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발행은행, KTNET) **<고용증가 증빙>** -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지식재산권 증빙>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등 **<ESG 관련 증빙>**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공단 직접 확인 가능 서류>**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또는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등)
❸ 전문성 확인	**<전문자격 증빙>** - 현재 운영 중인 업종과 관련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 사본 중 택일 **<전문인력 증빙>**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❹ 거래내역 확인	**<업력 3년 이상>** - 최근 3년간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월별 또는 분기별) **<업력 3년 미만>** - 최근 2년간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월별 또는 분기별) - (합계표가 없을 시) 판매처 또는 구매처 계약서 사본	
❺ 생산성 확인	**<외주업체 거래 중인 소공인>** - 외주업체와의 공급 관련 계약서 사본	
❻ 경영능력 확인	**<사업장 임차 시>** -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 관련 은행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상시근로자 보유 시> - 최근 3개월간 임금 지급 관련 은행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단, ①공통자료 - ❹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❼ 매장·점포 확인	**<통신판매업종 해당 시>**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❽ 기타	**<기타 자격 또는 교육 이수증>** - 현재 운영 중인 업종과 관련한 전문자격증(예시 : 바리스타자격증) 또는 소진공 외 타 기관에서 수강한 전문교육 이수증 사본	

※ 원활한 대출 심사를 위해 위 목록 중 보유한 모든 자료는 '대출 신청' 또는 '정책우선도 평가 선정' 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보유 여부 확인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중 대출신청인(공동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 외 제3자의 개인정보(성명 중 가운데 글자, 주민등록번호 등)는 가림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❶ 중 소상공인❷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❸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❶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❷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❸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제외)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업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 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❶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❷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❸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❶~❻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❶ 소상공인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❷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❸「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❻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❹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❺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❻「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3]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 방법>

❶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예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❷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서식8>'**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단,「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5] 제출서류 발급처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류명	발급처
공통 제출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상시 근로자 확인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주소 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정부24(plus.gov.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내거소사실증명	
	사업장·거주주택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정부24(plus.gov.kr), 자동차365(car365.go.kr)
	매출액 확인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장현황신고서	
추가 제출	법인 기업	법인인감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금리 우대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해당 은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전통시장화재공제(fma24.semas.or.kr)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보험 가입 기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증서	노란우산(www.8899.or.kr)
	가점 사항	수출실적증명원	**(직접수출)** 무역협회(www.kita.net),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ktspi.or.kr)
			(간접수출) 해당 은행, KTNET(www.ktnet.com)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등록원부	지식재산처 특허로(www.patent.go.kr)
		녹색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www.kociri.or.kr)
	전문성 확인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증	큐넷(www.q-net.or.kr)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rnd.or.kr/user/main.do)
	거래내역 확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경영능력 확인	은행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해당 은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매장·점포 확인	통신판매업신고증	정부24(plus.gov.kr/) 관할 시·군·구청